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08.25.
발의의원 : 임인환 권기훈,
감정옥, 류종우,
윤권근, 이동욱,
이재화, 이태손,
전태선, 하병문,
황순자, 허시영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무와 관련해 시장의 책무를 조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 내용

- 가.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관리 의무를 규정(안 제9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주택화재 예방 등 시책추진 책임)”을“(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화재의 예방 및”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를 예방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3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확인) 시장은 구·군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적절한지 지도·확인하여야 한

다.

제3조(중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관리 의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중 “주책”을 “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
제2조(주택화재 예방 등 시책추진 책임)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 -----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 -----.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①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확인) 시장은 구·군이 「소방시설

관계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 ⑦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